

건축공사업

■ 업무내용

종합적인 계획 ·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(또는 벽)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법인	개인
3.5억원 이상	7억원 이상

2. 기술능력

기술자격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
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기사
2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축분야의 종급 이상의 건설기술인
※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한다.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※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(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종급 기술인 이상 제외)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3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등급 이상	D등급
건축공사업	1,555,600원	3.5억원	83좌 (129,114,800원)	94좌 (146,226,400원)
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

4. 시설 · 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